

# 예산총칙

2023년도 간주예산 3 차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30,663,200	21,919,896
일반회계	711,008,310	21,330,249
특별회계	19,654,890	589,647
기타특별회계	19,654,890	589,647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6,819,706	204,591
주차장 특별회계	10,620,772	318,62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2,189	16,26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18,408	33,552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56,515	7,695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97,300	8,9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976,621천원(일반 5,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 33,976,62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 , [ ] 가 , [ ]  
 [ ] , [ ] , [ ] , [ ]